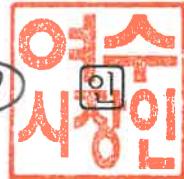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069호

붙임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69호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시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생 략) <u>③</u> (생 략)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u>②</u>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시장 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 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 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